

	<h1>강의평가 규정</h1>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5. 11. 1.
		최종개정일자	2022. 03. 01
		담당부서	교무입학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원의 교수방법 개선과 양질의 수업풍토 조성을 통해 학생의 학습 만족도를 높이고 수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수의 강의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시기) 강의평가는 매학기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개강 후 5주가 경과한 시점(중간강의평가) 및 학기말(최종강의평가) 정해진 기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3.01>

제3조(평가방법) ① 강의평가는 5점 척도 평가로 실시한다.
 ② 강의평가는 수강학생이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강과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③ 각 교과목 수강학생은 수강한 전체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를 완료해야 전체 수강 교과목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

제4조(평가대상) 강의평가는 당해 정규학기에 개설된 전 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과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03.01>

1. 현장실습, 사회봉사 등 외부 실습 과목<개정 2022.03.01>
2. 강의평가 응시 인원이 10명 미만 강좌<개정 2022.03.01>
3.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강좌<개정 2022.03.01>

제5조(평가방법 및 시기) ① 강의평가 주관 부서는 매 학기 초에 확정된 강의평가방법을 규정과 함께 교내 전산망에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03.01>

- ② 강의평가는 학기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03.01>
- ③ 원격수업 교과목에 대한 학생 강의 평가는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03.01>

제6조(평가유형 및 기준) ① 강의평가유형은 이론형, 이론 및 실험.실습혼합형, 실험.실습형, 온라인형(원격)으로 분류한다. 단, 블렌디드 러닝(blended-learning) 및 플립트 러닝(flipped-learning) 형태의 강의는 이론형으로 분류한다. <신설 2022.03.01>

- ② 강의평가는 선다형 5개~10개 문항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 학년도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후 부적절한 문항은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2.03.01>

제7조(배점기준) 각 설문 항목별 최고점수는 5점으로 하며, 아래표의 기준에 따라 설문내용을 평가한다.

평가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배점	5	4	3	2	1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 ① 강의평가는 강의개선과 각종 평가에 활용한다. <개정 2022.03.01.>
- ② 교원은 강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강의개선 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 <개정 2022.03.01.>
- ③ 강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 학년도 강의우수교원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3.01.>
- ④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하의 20%에 해당하는 교원은 강의의 질 제고를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는 교원은 교원업적평가, 승진 및 재임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개정 2022.03.01.>
- ⑤ 강의평가 하위 20% 연속 2회 받은 경우에는 경고장을 부여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수업컨설팅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01.>
- ⑥ 강의평가 하위 20% 연속 3회 받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총장이 별도로 재 교육을 명한다. <개정 2022.03.01.>
- ⑦ 제5항 및 6항에 해당하는 교원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 미이행 교원에 대하여 총장은 학생교육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03.01.>
- ⑧ 겸임, 초빙교원, 강사의 강의평가 결과 연속 2회 하위 20%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강의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03.01.>

제9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강의평가 결과는 총장, 담당교수 개인과 교원성과평가위원회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전임교원(겸임, 초빙, 강사)은 재임용 평가시에 해당 학과장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교과목에 대해서는 강의평가결과를 학생에게 공개 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